

관 산 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관산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중앙중/고등학교 및 한국 BOY SCOUT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 특별시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지부와 해외지국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중앙중/고등학교 졸업생 중 BOY SCOUT 활동을 한 자로써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정기총회에서 본회의 회원으로 승인된 자로써 제4조 3항을 필한 자로 한다.

3. 가입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을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자격을 득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명
2. 전임회장단 : 전임회장을 역임한 자
3. 회 장 : 1 명
4. 부 회 장 : 2 명
5. 감 사 : 1 명
6. 총 무 : 1 명
7. 이 사 : 15 명 이내
8. 필요에 의해 임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위 외에 다른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7 조 (고문/전임 회장단) 고문 및 전임 회장단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 8 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 9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감사) 감사는 재정업무 및 기타업무를 감사한다.

제 11 조 (총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재정업무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 12 조 (이사)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3 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회장의 지명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 15 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6 조 (결원의 보충) 결원의 보충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7 조 (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 및 임시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 18 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써, 본회의 업무 전반을 심의 의결한다.
회장은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 등 수인 경우 의결권을 가진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의 3번째 주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매년 4월중에 소집하며, 필요시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3. 총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단과 임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20 조 (정기모임) 본회의 정기 모임은 매 분기(3개월)마다 1회씩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1 조 (재정의 확보)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 회 비 : 회원 1인당 100,000원(약정에 의해 평생 1회 납부하며, 졸업 후 15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 회 비 : 회원 1인당 30,000원 (연 1회 납부)
3. 회 비 : 각종 회의 개최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특별회비 : 회원 및 명예회원의 자의에 의한 기부금.
5. 기타회비 :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비.

제 22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 매 년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해 정기 총회일 전 날 까지로 한다.

제 23 조 (결산) 본회의 결산은 재정 책임자(총무)가 감사의 적정 의견을 득한 후,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 승인된다.

제 24 조 (재정의 운영)

1. 본회의 재정은 일반 시증은행권에서만 운용되어야 한다.
2. 재정의 지출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국한한다.
3. 회원의 경조사에 따른 재정 지출은 직계 존비속에 국한하며, 관혼상제의 경우 100,000원 상당의 화환 또는 조화를 보낸다.

제 6 장 상 별

제 25 조 (포상)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며, 본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 할 수 있다.

제 26 조 (징계) 본회의 설립 목적에 현저히 저해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명한다.

제 27 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 28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확대와 유대강화
2. 중앙중/고등학교 및 BOY SCOUT 의 활동 지원
3. 회원의 자녀 및 모교 후배의 장학지원
4. 회보의 발간
5.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9 조 (지부 및 지국) 본회의 회장은 국내 지부 및 해외 지국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 30 조 (지부장 및 지국장) 본회의 회장은 필요시 지부장 및 지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 31 조 (지부 및 지국의 운영) 각 지부 및 지국은 본회를 위해 운영하며, 지부장 및 지국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9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